보도설명자료 Construction Worker Multipal Aid Association



배포일시: 2018. 1. 17.(수)

총 4 쪽

담당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기획관리팀

팀 장 신익철 (02-519-2011) 차 장 조원구 (02-519-2016)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심각, 연 1조원 추정'기사 관련 설명

○ 투데이안 등 1.16자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심각, 연 1조원 추정」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내용>

- ❖ …2016년도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된 퇴직공제금은 5,114억원 규모로, 2016년 기준 건설노동자 월평균 실제 근로일수(18.5일)와 퇴직 공제금 적립일수(6.4일) 차이를 환산하면 연간 1조원 정도의 건설 노동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이 누락될 것이라고 추정됐다.…
- ❖ …이는 2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현 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을 고의적 으로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16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의 년평균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는 2015년 78.8일 (월평균 6.5일), 2016년 77.9일(월 평균 6.4일)로 줄어 들었다.…
- ❖ …아울러 "2011년에도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누락과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누락 등 부실관리 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년간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부실관리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라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 '16년도 퇴직공제부금 월별 적립일수에 따른 연간 1인당 평균 근로 일수는 16.4일임

구분	적립근로자(명)	적립일수(천일)	평균적립일수(일)	비고
2016년	633,462	10,390	16.4	

□ 공제회는 건설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누락하면 해당 근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축소신고센터」를 '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 근로내역 축소신고('12~16.12.) 1,629건 소급 해소

- 최근 국회에서 건설근로자 누락을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 중
 - * 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중, 정부 입법안 국회 접수('17.11.6)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월평균 적립일수는 '15년 16.3일에서 '16년 '16.4일로 증가하였음

구분	적립근로자(명)	적립일수(천일)	평균적립일수(일)	비고
2015년	561,630	9,163	16.3	
2016년	633,462	10,390	16.4	

◆ 전체 적립근로자 연간 12개월을 근로했을 경우를 가정한 평균 적립일수는 '15년 78.8일이며, '16년 77.9일임(보도자료 내용)

연도	적립근로자(명) (A)	적립일수(천일) (B)	평균 적립일수(일) (B/A)	비고
2015	1,387,428	109,290	78.8	
2016	1,506,096	117,262	77.9	

□ 공제회는 2012년부터 이행부진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공사 진행 과정별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관리하고 있음

- 2016년 건설현장 출장 대상공사를 하도급까지 확대^{*}하여 시공중 미납사업장 집중관리를 통해 퇴직공제제도 이행율 제고
 - * 출장지도: 1,543개소 건설공사 246억원 소급적립
- 준공 예정공사 및 준공 후 미납 공제부금에 대해서도 해소 전담반 운영, 준공 미납사업장 민사청구 강화 통해 강제 이행 조치*
 - * 강제이행조치 : 678개 6.8억원. 경영상태 불량업체 292개소 25억원 선제 징수

구분		기 존	개 선			
착공	미가입	·과태료 부과 후 직권성립 검토	·과태료 부과요청 후 부과전 직권성립 추진			
시공		·원도급사 위주 출장 ·축소신고 민원접수 사항 유선/문서 조치	·하도급사까지 출장 확대 ·출장 및 축소신고 사업장 관리강화 ·이행부진 사업장 관리기준 강화			
준공	미신고/ 미납부	·과태료 부과요청 사후관리 미흡 ·준공미납공사 대상 민사조치	·과태료 부과현장 일제정리 ·준공공사 + 준공예정공사까지 민사조치 확대			
폐업 부도		·폐업, 부도 후 민사조치	·실시간 경영상태 파악을 통해 폐업, 부도 전 민사조치			

- □ 또한, 건설인력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신고누락 방지를 위해 '15년 9월 부터 운영해온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6개소→36개소)은 97%의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전자카드제 사용 의무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중*
 - * 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중

퇴직공제부금 월별 적립일수

< 퇴직공제제도 개요 >

- (가입대상) △3억 이상 공공공사 △100억 이상 민간공사 △200호(실)이상 공동주택·등
- (적용 근로자) 퇴직공제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 신고·납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매월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1일 4,200원)을 납부
-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252일)이고,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이른 건설근로자 등에게 납부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

<월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5			2016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 (명)	적립일수 (천일)	평균적립 일수(일)	적립근로자 (명)	적립일수 (천일)	평균적립 일수(일)	적립근로자 (%)	적립일수 (%)	평균적립 일수(%)
 평균	561,630	9,163	16.3	633,462	10,390	16.4	12.8	13.4	0.5
1월	487,502	8,259	16.9	523,261	8,407	16.1	7.3	1.8	-5.2
2월	460,694	6,540	14.2	524,206	7,530	14.4	13.8	15.1	1.2
3월	546,158	9,203	16.9	614,810	10,519	17.1	12.6	14.3	1.5
4월	558,250	9,154	16.4	627,712	10,412	16.6	12.4	13.7	1.2
5월	568,774	9,306	16.4	643,416	10,705	16.6	13.1	15.0	1.7
6월	580,280	9,604	16.6	660,426	11,059	16.7	13.8	15.2	1.2
7월	575,071	9,414	16.4	649,914	10,491	16.1	13.0	11.4	-1.4
8월	582,713	9,327	16.0	659,248	10,874	16.5	13.1	16.6	3.1
9월	571,147	8,896	15.6	650,457	9,895	15.2	13.9	11.2	-2.3
10월	615,855	10,573	17.2	687,952	11,655	16.9	11.7	10.2	-1.3
11월	604,902	9,796	16.2	696,018	11,930	17.1	15.1	21.8	5.8
12월	588,215	9,878	16.8	664,128	11,200	16.9	12.9	13.4	0.4